

2018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 공고

『2018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8년 4월 6일

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

■ 사회적기업이란?

- ◆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,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조직)을 말함
- ◆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
- ◆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
■ 예비사회적기업이란?

- ◆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
- ◆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,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

I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18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
- 사업내용 :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
- 사업기간 : 협약 후 ~ 2018. 9. 14.까지
- 지원규모 : 10개 내외기업, 기업당 1천만원 한도

II. 신청자격

- 모집대상: 사회적기업 창업(전환)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
-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사업 기간 내 고양시에 사회적기업 창업(전환)이 가능한 사업자 ※ 공고일 기준

○ 신청제외 대상

1.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2. 동일 과제로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에 선정 또는 수행(완료 포함) 중인 기업
3.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4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

III. 지원내용

지원 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
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 : 기업당 1천만원 한도 - 기업 부담금 : 지원금의 10% 이상 의무부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사업비 구성 예시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총사업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지원금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기업부담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1,000천원</td> <td>10,000천원</td> <td>1,000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항목 : 시제품제작, 마케팅, 교육, 인증 *[참고 1] 사업비 집행 항목 - 지급방식 : 1차 지원금(80%,선지급), 2차 지원금(20%,후지급) - 선정 후 중간평가 실시 : 진행사항 점검, 계속 지원 여부 평가 - 최종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(불량 판정 시 사업비 환수) 	총사업비	지원금	기업부담금	11,000천원	10,000천원	1,000천원
총사업비	지원금	기업부담금					
11,000천원	10,000천원	1,000천원					
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기업 창업 전문 과정(20시간 이상) *[참고 3] 교육과정 - 대표 또는 사업 수행 책임자(1명 필수 참가) 						
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 1:1 코칭 - 대표 또는 사업 수행 책임자(1명 필수 참가) 						
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따복품마루 입주 신청 자격 부여 *사무공간, 회의실, 네트워킹 등 인프라 지원 						

IV. 의무사항

-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*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* 지침 및 기준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선정기업은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기업부담금을 선정사업 운영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구분	제출 시기	보증 금액	보증 기간
지급보증보험증권	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(휴일 포함)	총 지원금액	~ 협약기간 + 365일

※ 보증보험증권 제출 기한 내 미 제출 시에는 지원 취소 등 후속 처리

- 사업기간 내 ‘사회적기업 육성법’ 인증 요건에 따른 기업 형태(법인 등)를 갖추고, 사회적기업 정관/규약을 구비해야 한다.

▶ 조직 형태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-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 -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 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

▶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(공증 필수)

-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
 -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
 - 이 요건은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

-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, 1년 이내에 경기도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하여야 한다.
- 선정기업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V.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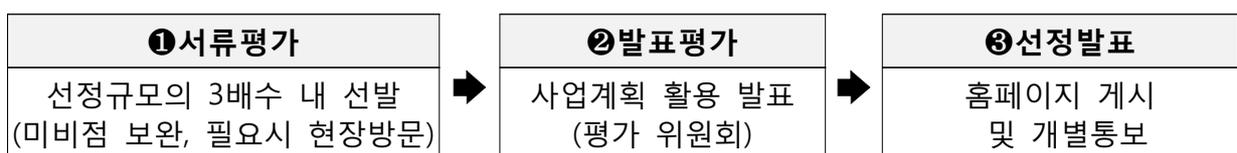
- 모집기간 : 2018. 4. 6.(금) ~ 2018. 4. 27.(금) **18:00까지**
- 접수처 :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 접수
 - 방문·우편주소: (10464)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
 - 이 메 일 : webmaster1@gipa.or.kr
- ※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(www.goyangse.or.kr) 신청서 다운로드
- 제출서류

구분	서류 명	원본	사본	해당 사항	
				개인	법인
필수 제출	사업 신청서(별지1)	1부	-	○	○
	사업 계획서(별지2)	1부	-	○	○
	2016, 2017년 재무제표	1부	-		○
	2016, 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	1부	-	○	
	사업자등록증	-	1부	○	○
	법인등기부등본	-	1부		○
	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	1부	-	○	○
	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(서식 3)	1부	-	○	○
	기업 부담금 협약서(서식 4)	1부		○	○
선택 제출	취약 계층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	-	1부	해당자에 한함	
	기부(후원) 및 봉사 활동 증명서	-	1부		
	사회적기업 교육 수료증 각 1부	-	1부		
	사업 관련 보유 인증서 및 지적 재산권		1부		

※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매출 증빙 미제출 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)

VI. 선정평가

- 선정평가 절차



○ 선정방법

1. 서류평가(필요시 현장방문 조사 실시)

-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발표평가 대상 선발

※신청자가 선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상위기업 순으로 선정규모 대비 3배수 내에서 1차 선발

- 평가항목:

*본 사업의 목적, 기본 자격 조건 부합 여부 검토

*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미비 사항이나 사업비 예산 비목 등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

2. 발표평가

-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

- 평가 기준 : 정량 평가(10%) + 정성 평가(90%)

- 아이템의 개발 동기, 사업화 전략, 시장진입 전략,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평가*[참고 2] 심사기준

-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5분 이내 발표

3. 선정결과 발표

- 홈페이지 및 개별(이메일) 안내

VII. 추진일정(안)

진행	내 용	일 정	비 고
공고	• 공고 및 신청서 접수	4. 6. ~ 4. 27.	
평가 · 선정	• 서류평가(1차)	4. 30 ~ 5. 4.	결과 개별 안내(5. 4.)
	• 발표평가(2차)	5. 10.(예정)	
	• 선정 결과 발표	5. 11.	홈페이지, 개별 안내
협약 · 교부	• 보완사항을 포함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	5. 14.~5. 17.	사업지침 및 일정 안내
	• 협약식 ※ 참석필수	5. 18.(예정)	기업부담금, 증권 제출
	• 지원금 1차 교부	5. 29.	
사업 추진	• 사업계획 실행 • 교육 및 컨설팅 진행 • 중간보고서 제출, 중간 평가(7월 예정)	5월 ~ 9월	중간점검 부적격 시 지원금 환수
성과 공유	•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• 최종평가, 지원금 2차 교부 • 결과공유회 진행(9월)	9월 ~ 10월	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

※ 상기 일정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VIII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-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함
-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지원금은 협약 후 총 지원금의 80% 이내로 선지급 하며, 최종평가(사업비정산보고) 결과 ‘60점이상’ 기업에 한하여 20% 내외를 후지급함(협약기간내 총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함)
- 협약서(사업 계획서)의 예산 미소진 또는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발생 시 지원금 삭감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
- 상기 공고 사항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IX. 문 의 처

-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(031-960-7873/7876)
- ※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(09:00~18:00)